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최재규 의원 대표발의]

의 번	안 호	2197
--------	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24.

발의의원 : 최재규 의원,
박주용 의원, 신달호 의원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사회복지법인, 장애인관련 단체 등” 을 “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” 으로 조문 변경함(안 제4조제1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련 법령 : 「 사회복지사업법 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사회복지법인, 장애인관련 단체 등” 을 “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,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한다.	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재활시설은 <u>필요한 경우, 사회복지법인이나 비 영리법인에</u> 위탁 운영한다.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**(발췌)**□ 사회복지사업법**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